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약식명령 절차의 집행유예 명문화 및 노역장유치
집행정지 사유 완화〉

■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28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 주요내용	3
2. 현행제도 개관	5
3. 검토의견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성윤의원 등 16인
2. 발 의 일: 2026. 4. 23.
3. 회 부 일: 2026. 4.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노동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환자를 노역에 유치하는 경우 교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치료·간병 등 재정적·행정적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으며, 노역장 유치 집행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역장 유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정시설 과밀화, 교정기관 내 의료시설·의료인 부족 등 상황에서 고령자나 환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사망·치료 등 위험상황 대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8. 1. 7.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경미한 벌금 사건의 대부분이 처리되고 있는 약식절차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위와 같은 노역장 유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으로,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약식명령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48조 제2항).

나.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형사소송법」에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의 사유를 완화하여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때’를 추가함(안 제492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약식명령 절차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함을 명문화하고(안 제448조제2항), 노역장에 유치된 자가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노역장유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것임(안 제492조).

현행	개정안
第448條(略式命令을 할 수 있는 事件) ① (생략) ②前項의 境遇에는 追徴 其他 附隨의 處分을 할 수 있다.	第448條(略式命令을 할 수 있는 事件) ① (현행과 같음) ②-----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추징-----.
第492條(勞役場留置의 執行) 罰金 또는 科料를 完納하지 못한 者에 對한 勞役場留置의 執行에 是 刑의 執行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단서 신설>	第492條(노역장유치의 집행과 정지의 특례)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된 자가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471조제1항제1호 및 제471조의2에도 불구하고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u>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u> <u>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u> <u>노역장유치 집행을 정지할 수</u> <u>있다.</u>
--	--

2. 현행제도 개관

가. 약식명령제도¹⁾의 의의 및 개정취지

약식명령제도는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 없이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간이한 형사 절차로, 현행법상 약식명령 절차에서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으나 형의 집행유예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가 이루어지지 않음.

한편, 2016. 1. 6. 「형법」 제62조 제1항이 개정되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2018. 1. 7.부터 시행되었으나, 경미한 사건이 처리되는 약식절차에서는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현행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2항은 약식명령에서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집행유예가 “부수의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으며, 실무상 약식절차에서 집행유예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정안은 해석상 불명확성을 입법적으로 해소하는 취지가 있음.

나. 노역장유치 제도의 의의 및 개정취지

노역장유치는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를 노역장에 유치하여

1)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로, 현행 「형사소송법」 제492조²⁾는 노역장유치 집행에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노역장유치 집행의 정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이 적용되는데, 동조 제1호는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를 집행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제471조의²³⁾는 위 제1호 사유에 의한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3. 검토의견

개정안은 약식명령에서 집행유예가 “부수의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해석론이 있어 왔으며, 실무상 약식절차에서 집행유예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해석상 불명확성을 입법적으로 해소하는 그 취지가 있고, 노역장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완화하여 교정시설 과밀화, 교정기관 내 의료시설·의료인 부족 등 상황에서 고령자나 환자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 추가 관련하여 개정안은 현행 형의

2) 제492조(노역장유치의 집행)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집행정지 사유보다 완화된 요건인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때”를 추가하는 것인바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이라는 표현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집행정지 사유가 자의적으로 확대되는 등 집행정지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는 “제471조 제1항 제1호 사유에 의한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에 대하여 제471조의2의 심의위원회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법원행정처는 약식절차의 집행유예제도 명문화 관련하여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취지 및 활성화·실질화 필요성 등을 고려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 완화 여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교정기관 내 의료시설·의료인 부족 등 상황, 재정적·행정적 비용, 사망·치료 등 위험상황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63